8. 公共用地의 取得 및 損失補償에 관한 特例法施行規則中改正令(案) 立法豫告

건설교통부공고 제1997-250호 1997. 7. 14

주요골자

가. 주거용건물에 대한 평가액이 100만원미만일 경우의 보상액은 100만원으로 하고 있는 것을 주거용건물에 대한 평가액이 300만원 미만일 경우의 보상액은 300만원으로 하도록 조정

나. 영농보상액 산정기준이 되는 실제 재배하는 작물은 공공사업의 예정지역으로 고시된 당시에 실제로 재배하고 있는 작물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영농보상액산정은 농촌진흥청장이 조사·발표하는 농축산물표준소득에 의해 사정하되 농축산물표준소득이 농림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통계에 의한 전국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산물수입의 2배를 초과하는 작물에 대하여는 과거 3년간의 실제소득을 평가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함.

개정이유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협의취득에 따른 손실보상기준중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규정들을 정비함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되도록 하는 등 현행규정의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

주택회보